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연체전 선제적 관리, 연체시 성실상환 유도 필요–

김 대 성

코로나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수도 느는 것에 비례하여 채무조정 실효율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없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계기를 성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유도,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체계 마련 등이 필요해 보인다.

1 개인채무자의 대출연체 증가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¹⁾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2024년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하였고,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0.31%에 비해 0.42%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채무자의 국내은행 1개월 이상 가계대출 등 연체율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0.17%였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1%였는데,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40%이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각각 0.23%p, 0.15%p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은행 1개월 이상 대출금 연체율

(단위: %)

내용	2021.6	2021.12	2022.6	2022.12
대출금	0.25	0.21	0.20	0.25
기업	0.32	0.26	0.22	0.27
가계	0.17	0.16	0.17	0.24
주택담보	0.11	0.10	0.10	0.15
내용	2023.6	2023.12	2024.4	차이
대출금	0.35	0.38	0.48	0.22p
기업	0.37	0.41	0.54	0.22p
가계	0.35	0.35	0.40	0.23p
주택담보	0.23	0.23	0.26	0.15p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2024.6.28.(최종확인)

※ 차이: 2024.4월과 2021.6월 비교

이와 같이 대출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들이 당분간 한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인채무자가 선택 가능한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연합뉴스,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돌파…1년새 37% ↑”, 2024.5.8

2 개인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라 함)의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개인파산’과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나 고정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하는 ‘개인회생’으로 나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에 따른 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6~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수입 등 법률 자문 비용이 든다. 개인회생의 경우 3~5년간의 기간 동안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²⁾를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하게 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³⁾은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당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신청

비는 5만원이고,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신청 후 확정 시까지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표 2] 개인 채무조정제도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채무자	30일 이하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연체	상환불능이나 고정소득	상환불가
시행시기	2019.9	2009.4.	2002.10	2004.9	1962.1
채무액 상한	무담보 5억, 담보 10억 *개인워크아웃 사업자 30억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제한없음
변제기간	10년 이내 *사전 개인워크아웃 담보 35년			3~5년	-
채무감면	연체이자 감면	이자채권 전액감면/원금 70%, 소외계층 90% 최대 감면		보유재산 이상 변제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
정보 공유기간	미등록		신용회복 확정 후 1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	면책결정 후 5년
보증인 독촉	독촉 불가			독촉 가능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정리

3 개인채무조정제도 운영 실적

최근 개인채무조정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원의 개인회생은 2020년 8만 6,553건이 접수되었으나, 2023년 말 기준으로 12만 1,017건이 접수되어 증가하였다. 개인파산은 2020년 5만 379건이 접수되었는데 2023년 말에는 4만 1,239건이 접수되어 감소하였다. 인용률은 최근 들어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개인도산 관련 접수 및 인용 현황

(단위:건수)

연도	접수		결정/선고전 인용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2020	86,553	50,379	78,168	44,417
2021	81,030	49,063	68,174	49,808
2022	89,966	41,463	72,483	43,337
2023	121,017	41,239	91,308	41,212
2024.5	55,335	17,093	40,254	16,429

※ 주: 2024년 7월 1일 추출된 자료임

※ 자료: 법원통계월보

2)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최저생계비금액은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임.

3) 신복위의 채무조정시 개인워크아웃의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제외채무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가용소득은 조정채무 월변제액으로 사용됨.

다음으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규모의 신청이 있었다.

[표 4] 신복위 조정제도 접수 및 확정 현황

(단위:건수)

연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2020	7,166	6,170	22,102	22,157	99,486	87,488
2021	11,849	10,570	18,784	17,285	96,514	86,008
2022	21,996	16,766	26,827	23,383	89,521	80,952
2023	45,925	42,982	39,512	37,795	99,706	86,844
2024.5	21,248	19,848	15,952	15,306	43,860	36,699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의 채무조정 평균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이자율 감면이 주로 이루어지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 한도 내에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금 감면이 동반되는 개인워크아웃은 통상 7~8년 정도 기간 동안 상환하고 있다.

[표 5]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 상환기간

(단위: 개월)

연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2020	111.5	109.2	82.5
2021	113.7	111.2	84.2
2022	112.0	111.5	85.4
2023	113.6	114.0	87.6
2024.5	113.7	114.8	88.7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조정제도의 감면율을 살펴보면, 사전채무조정의 감면율이 높고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감면율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최근 들어 이자율 감면율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감면이 수반되므로 조정과정에서 감면율이 통상 40%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4) 이자율 감면 상한을 신속채무조정은 15%(카드는 10%), 사전채무조정은 8% 수준으로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감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6] 신복위 채무조정 감면율

(단위: %)

연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2020	31.2	53.1	39.3
2021	27.8	53.6	43.6
2022	27.6	63.0	43.8
2023	40.3	62.4	41.0
2024.5	43.0	62.0	41.4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감면율은 신속/사전채무조정(종전 이자율에서 조정 이자율 차액비율), 개인워크아웃(원금 감면비율)

다만, 채무조정의 실효(효력상실)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정 결과에 따른 상환을 4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실효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⁵⁾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신속채무조정은 실효율도 높아지고 있고,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역시 20%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어 고금리 및 경기위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신복위 채무조정 실효율

(단위: %)

연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2020	4.2	21.2	17.6
2021	9.7	33.1	20.7
2022	15.4	28.4	24.5
2023	11.9	23.1	25.1
2024.5	17.2	29.5	27.2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실효율은 기준연도 채무조정 확정자 수 대비 기준연도 실효자 수 비율

4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과제

(1)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함)이 2024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천만원 미만의 채무로서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연체 발생 전이라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개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제도

5) 아시아경제, “채무조정 ‘골든타임’ 1년…신복위 대책 강화필요”, 2022.11.14.(채무조정 도입 5개월부터 실효율이 급증)

를 활용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와 각각 조정해야 하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활용하기보다는 신복위에 일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한 상황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보다는 당장 추심을 피하거나 90일 연체 이후에 원금까지 감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시적 수단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할 개연성이 있다. 최근 개인채무자 연체율 증가로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고, 감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단기 실업자, 무급 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이 대상인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조기 성실 상황을 돕기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⁶⁾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하여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한편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2)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황 유도

장기연체자가 선택가능한 수단 중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보다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 급증하였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채권금융회사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채무 이외에 개인사채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발생한 채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조정 대상 채무의 범위가 넓은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회생이 3~5년의 범위에서 변제를 인정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7~8년의 기간 동안 상

환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간 동안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생활비 조정 등 채무자의 자율적 변제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는 성실상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주요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⁷⁾는 5년 내외로 변제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월채무상환 금액의 과다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미래소득, 순자산, 소비억제 계획 등을 감안하여 감면율 산정방식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⁸⁾ 또한, 장기간 성실 상황⁹⁾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잔여채무를 추가 감면하거나 소액채무는 즉시 면책하는 등 건강한 생활상환 습관 형성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 체계 마련

현재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신청자의 연령, 역량 등 미래 소득이나 지출 정도를 고려한 채무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채무조정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과정에서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⁰⁾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6)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있다」는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대면으로 제공해 온 고용,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24.6.30.부터 운영하고 있음

7) 남주하,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14권10호 2024.5.13.~5.26[미국(3~5년), 독일(통상 6년), 일본(3~5년), 한국(최장 10년)]

8) 남주하 앞의 자료

9) 신복위는 채무금액 1,500만원 이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 3년 이상 성실 상황 시 잔여채무(50% 상환율 전제)를 면제하고 있음

10) 구정한.이규복, 사적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KIF VIP 리포트, 2020-04, 2020.6, P61

